

의안번호	2217761
의 퇴 인	서왕진 의원
회 답 일	2026. 9. 3.
추계번호	26A1782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정의)	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2. “재생에너지”란 햇빛·물·<u>공기</u>·지열(地熱)·강수(降水)·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아. 수열·해수열·하천열·공기열 등 자연적 열원이나 하수열 등 미이용 폐열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조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포함되는 에너지의 범위가 확대되면 동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관련 재정지원 사업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현행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는 “햇빛·물·지열(地熱)·강수(降水)·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”로 정의함 (법 제2조제2호)
 -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원에 공기를 포함하고, 재생에너지의 유형에 수열·해수열·하천열·공기열 등 자연적 열원이나 하수열 등 미이용폐열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

에너지를 추가함

- 개정안이 추가하는 열에너지 중 공기열·해수열·하천열의 경우 현행법 시행령¹⁾에 규정되어 있으나, 하수열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하수열 관련 재정사업이 신규로 추진될 수 있음

[표 1] 에너지원의 종류와 기준 및 범위

에너지원의 종류	기준 및 범위	
5. 수열에너지	가. 기준	물의 열을 히트펌프(heat pump)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
	나. 범위	해수(海水)의 표층 및 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
6. 공기열에너지	기준	자연 상태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에너지

자료: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」 별표1 (일부)

- 다만, 개정안은 새로 추가하는 열에너지의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하수열 관련 신규 재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현시점에서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- 참고로, 현행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(전력산업기반기금)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-내역사업 (코드)	내용	예산	
		2025	2026 (제1회 추경)
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(5202-303)	주택, 건물,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	168,212	276,712
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(융자) (5202-304)	신·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제조·생산 또는 설치하는 자에게 장기·저리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마련	426,300	868,469

1)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」 별표1

세부사업-내역사업 (코드)	내용	예산	
		2025	2026 (제1회 추경)
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 지원 (5202-302)	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에 참여한 신재생에 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법정 의무 지출사업	34,072	5,060
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개발 (5703-301)	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 및 미래기 술 선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·연관산업 글 로벌 경쟁력 강화 및 자원안보에 기여	314,103	335,756
차세대 재생에너지 표 준화 및 인증고도화 혁 신 지원(R&D) (5202-323)	초대형 해상풍력 발전설비, 차세대 태양광 설비 등 신기술 개발성과의 보급을 위한 KS표준 개발, 성능평가장비 구축 지원 및 국내기업의 국제표준 대응 지원	2,000	5,615
재생e 인버터 성능개선 (5202-325)	태양광 밀집지역 내 지속운전기능 구비 의 무화 이전에 설치된 태양광 인버터 대상 성 능개선	—	3,000
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 진출지원 (5202-328)	-(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) 국내 신재생에너지 중소·중견 기업이 다변화 하는 해외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수출역 량 강화 지원 -(해외인증획득지원) 해외인증획득,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, 해외진출지원센터, 에 너지대전 개최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 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지원 -(해외타당성조사)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 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, 정부가 기 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-(상용화지원) 해외시장 신규 비즈니스 모 델 창출을 위해 실증사업 투자를 통해 국 내기업의 Track Record 확보 지원	6,195	8,247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
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
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박선아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선아	02-6788-4652	sunapark@nabo.go.kr